

예산총칙

2021년도 추가경정 제1회

제 1 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2,622,498,435	78,674,953
일반회계	2,098,879,003	62,966,370
특별회계	523,619,432	15,708,583
공기업특별회계	241,362,621	7,240,879
상수도사업	74,223,222	2,226,697
하수도사업	167,139,399	5,014,182
기타특별회계	282,256,811	8,467,704
공유재산관리	95,458,261	2,863,748
의료급여기금	9,630,022	288,901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	718,370	21,551
교통사업	86,321,963	2,589,659
철도건설사업	5,481,795	164,454
폐기물처리시설	5,474,845	164,245
도시재정비촉진	1,326,834	39,805
도시개발	31,744,765	952,343
공공시설등 설치	3,723,514	111,705
문화시설건립	31,181,806	935,454
도시재생	11,044,636	331,339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	150,000	4,500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와 같다. 단, 각 공기업특별회계는 별책으로 한다.

제 3 조 2021년도 채무부담행위는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 와 같다.

제 4 조 2021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 와 같다.

제 5 조 2021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 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6,399,220천원으로 한다.

(1) 일반예비비 14,047,920천원

(2)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000,000천원

(3) 내부유보금 351,300천원

제 7 조 2021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107,6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지방채상환(원리금 등), 재해 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